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971
------------	------

2025. 9. 1.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5. 8. 11. 유정희 의원 발의 (2025. 8. 14. 회부)

2. 제안이유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이 창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배경

-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나,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에 비해 낮게(3.8%) 나타남에 따라¹⁾, 인공지능 활용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역량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하여(붙임1 참고),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특화된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임²⁾.

1)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효과: 기계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25-22, 2025.8.18.) 인용 및 재구성

2)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을 마련하였음.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계획의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임.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분	조 항	내 용
안 제1조 ~ 안 제4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 시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함양 ·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안 제5조	기본계획	·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6조 ~ 안 제14조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 (역할) 교육을 위한 지원 사항 지문 등 · (구성) 15인 이내 : 공무원,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 (임기) 2년, 연임가능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기본원칙 준수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기본조례 준용 · (존속기한) 시행일부터 5년
안 제15조 ~ 안 제16조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정책 동향, 프로그램 연구, 전문인력 양성, 홍보 등

(1) 조례안의 제명(제명)

- 조례안의 제명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에 외래어는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⁴⁾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등⁵⁾

3) “인공지능 리터러시” 용어를 제명으로 하는 법령은 없으나, 유사한 사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명에 사용하고 있음.)

4) “2022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p.395(법제처)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외래어·외국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등 전문 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한다.)”

5) 국회도서관의 “EU 인공지능법” 번역본에 따르면, ‘AI literacy’를 ‘인공지능 문해력’ 또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으로 번역하고 있음.

한글 제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⁶⁾).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관련된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법과 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경우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⁷⁾에서, 국내외 연구 등 각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명과 함께 일괄하여 용어를 수정(“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내외 연구 중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정의 비교 >

구분	출처	인공지능 리터러시 정의(원문 인용, 번역)
국내	「AI 시대의 리터러시 특성에 관한 연구」 (이유미, 2021)	AI로 인해 변화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적응하는 능력
	「대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척도 개발」 (임철홍 외 2명, 2024)	개인이 AI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며, 온라인, 가정 및 직장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국외	「What is AI Literacy? Competencies and Design Considerations」 (Long & Magerko, 2020)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협업하며, 온라인, 가정 및 직장에서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역량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n exploratory review」 (Ng 외, 2021)	사람들이 AI 기반 기술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고, 배우며, 일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

6) 참고로 “리터러시”는 일반 시민에게 다소 낯선 외래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명에서 삭제할 경우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가 되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조례 제정 목적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도 있겠으나,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7) EU의 인공지능법에서는 ‘AI literacy’를 “이 규정의 맥락에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제공자, 배포자 및 피침해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배포하고 인공지능의 기회, 위험, 인공지능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지식 및 이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_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외국법률번역본 제3조(정의))

(3)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본방향, 단계별·분야별 사업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가 수립해 본 경험이 없고, 타 지자체 사례도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

- 향후 디지털도시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방향(안 제5조제2항제1호)과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안 제5조제2항제2호) 등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⁸⁾와 교육부⁹⁾ 등 중앙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¹⁰⁾(이해·분석·활용·윤리)를 바탕으로 실행·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 >

구 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
인공지능 이해		· 인공지능 구분하기 · 지능(인간, 동물 및 기계)에 대한 이해(비교)하기 ·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식별하기 ·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구분하기
인공지능 분석		· 인공지능의 강점과 약점 식별하기 · 인공지능의 영향 비판적 평가하기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 컴퓨터가 추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머신러닝	· 머신러닝 학습 단계 이해하기 · 인공지능에서의 인간 역할 인식하기 · 기본 데이터 이해하기 ·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는 것 인식하기 · 데이터 비판적 해석하기
	로보틱스	· 인공지능이 물리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이해(로봇 공학)하기 · 컴퓨터가 센서를 사용하여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 식별하기

8)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혁신의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9.26.)

9)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교육부 발표자료(2023.2.23.)

10) “사회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문성 외1명, 2023)

구 분	인공지능 리터러시 세부 요소
인공지능 윤리	• AI를 둘러싼 주요 윤리적 문제(예: 개인 정보 보호, 잘못된 정보, 윤리적 의사 결정, 다양성, 편향, 투명성, 책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식별하고 설명하기

*출처: 사회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문성 외1, 2023), Long & Magerko, 2020: 4-7 재구성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안 제6조~안 제14조)

-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¹⁾.
- 자문위원회 역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운영 경험이 없고, 자문 대상 안건의 종류와 건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본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 ~ 5. (제정안과 같음)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정책 및 프	

11)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로그래밍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u><신 설></u>	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4) 지원사업(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시장이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국·내외 동향 등 조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각 자치구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2.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8개 사업이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붙임2), 이들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의미가 있음.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시민대상 인공지능 교육 현황 >

구분	부 서	교육과정	교육대상	리터러시 포함여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디지털 배움터	일반시민	X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청년	X
	첨단산업과	전문가초청교육, 생성형AI교육	일반시민	O
		창업관련 2개 과정	청년	일부포함
	소상공인정책과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중장년	O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센터 AI교육(23개 센터)	학생 (일반시민 일부)	일부포함
투자출연기관	평생교육과	온라인강의(24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일반시민	O
	서울AI재단	어디나 지원단	어르신	X
	서울경제진흥원	하이서울 기업 AI역량교육	일반시민	O
	서울여성가족재단	AI활용, 기업실무, 보안, 인턴교육	여성	일부포함
	서울시50플러스재단	AI활용 직업훈련	중장년	O

*출처: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AI행정정책팀 조사·제출자료('25.8.26.)

- 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리터러시 교육을 대상별(청년·중장년·고령층 등)로 보다 체계화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급속한 인공지능 확산 속에서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이해·활용하고, 윤리적·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안에 사용된 외래어 “리터러시”의 용어 정비, 시행중인 기본조례와의 기본계획 연계, 위원회 설치의 통합 운영,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조례안은 시민 대상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우선 마련함으로써 시행 과정에서 효과성과 정책 수요를 검증하고, 그 결과 드러나는 중복·보완 과제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기본조례와의 정책 연계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기본조례에 따른 세부 분야별 조례로 정리하여, 기본조례가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본 조례안이 교육 분야의 세부 실행계획을 특화·보완하는 구조로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김태훈	02-2180-8203

[붙임1] 관계법령 (p.11)

[붙임2] 서울시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현황 (p.1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서울시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현황

*출처: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AI행정정책팀 조사·제출자료('25.8.26.)

구분	부 서	교육과정	교육대상	리터러시 포함여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디지털 배움터	일반시민	X
		직원 AI 특강	내부직원	X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청년	X
		시 및 자치구 상담사 직무교육	내부직원	O
	첨단산업과	전문가초청교육, 생성형AI교육	일반시민	O
		창업관련 2개 과정	청년	O 및 X
	소상공인정책과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중장년	O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센터 AI교육(23개 센터)	학생 (일반시민 일부)	O 및 X
출 자 출 연	평생교육과	온라인강의(24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일반시민	O
	인재개발원	직원교육(25개과정)	내부직원	O 및 X
	서울아리수본부	직원교육(2개과정)	내부직원	O
	서울AI재단	어디나 지원단	어르신	X
		직원 교육(4개과정)	내부직원	O
	서울경제진흥원	하이서울 기업 AI역량교육	일반시민	O
	서울여성가족재단	AI활용, 기업실무, 보안, 인턴교육	여성	O 및 X
		생성형 AI 교육	내부직원	O
	서울시50플러스재단	AI활용 직업훈련	중장년	O
		직원 AI역량강화	내부직원	O
	서울교통공사	직원 AI역량강화(2개과정)	내부직원	O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원 AI역량강화(5개과정)	내부직원	O 및 X
	서울디자인재단	AI전사교육	내부직원	O
	서울문화재단	생성형AI특강	내부직원	O
	서울시립대학	직원 AI역량강화	내부직원	X
	서울시설공단	직원교육 13개과정	내부직원	O
	서울신용보증재단	생성형 AI 교육	내부직원	O
	서울연구원	직원 AI역량강화	내부직원	O
	세종문화회관	직원 AI역량강화	내부직원	O
	서울복지재단	직원 AI역량강화 4개과정	내부직원	O 및 X

※AI교육은 일반적인 디지털교육 내용 중 AI를 교육하는 것도 포함하였음